INCOTERMS 2000과 非海上賣買條件*

崔 銘 國**

Ⅰ. 序 論
Ⅱ. 非海上賣買條件의 主要 改正內容과 特徵
1. 積出地 引渡條件
2. 到着地 引渡條件
Ⅲ. 結 論

Ⅰ. 序 論

국제무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定型去來條件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Incoterms(이하 인코텀즈로 표기한다.)는 1936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時宜의 貿易慣習(current trade custom)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6차에 걸쳐 개정 내지 보완되었다. 그렇지만 인코텀즈 1990은 時宜의 貿易慣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 세부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國際商業會議所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또 무역업계에 21세기에 대처할 수 있는 國際規則을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약 2년간의 노력 끝에 인코텀즈 2000을 새로이 준비하였다. 그렇지만 國際商業會議所는 현재 범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코텀즈에 큰 변화를 주기 보다는 時宜의 貿易慣習을 보다 명료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인코텀즈상의 사용문언을 통일시키고, 引渡場所, 積載와 揚荷義務, 危險移轉, 費用負擔 등과 관련한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면서 時宜의 무역관습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금번 개정작업에 임하였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는 실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첫째는 FAS 조건과 DEQ 조건에서의 통관의무부

* 본 論文은 慶一大學校 敎內學術硏究費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慶一大學校 國際通商學科 副敎授.

담자의 변경이며, 그 둘째는 FCA 조건에서 물품인도의 장소와 완료시기를 운송방식별 규정에서 인도장소별 규정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금번에 개정된 인코텀즈 2000에서의 主要 改正內容과 그 特徵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고의 연구범위로는 13 가지의 定型去來條件 중에서 非海上賣買條件에 해당하는 EXW, FCA, CPT, CIP, DAF, DDU 및 DDP 조건 등 일곱 가지의 定型去來條件에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인코텀즈 2000 및 개정시의 주요 토론자료를 참조로 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다.

Ⅱ. 非海上賣買條件의 主要 改正內容과 特徵

1. 積出地 引渡條件

(1) EXW (Ex Works … named place)

(가) 前文

인코텀즈 2000의 개정작업 중에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본 EXW 조건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慣行은 매수인이 보내온 수거용 차량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EXW loaded' 또는 'EXW loaded and cleared'로 정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1] 國際商業會議所는 EXW 조건에서 賣渡人의 최소의무에 관한 전통적인 원칙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제의를 채택하지 않았다.[2]

신 조건의 前文에서 나타난 主要 改正內容과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In particular, he is not responsible for loading the goods on the vehicle provided by the buyer or for clearing the goods for exports unless

1) 벨기에의 ICC 국내위원회가 ICC 본부로 보낸 1999. 3. 8일자 서신 및 Working paper "EXW(RDR-03)" 참조.

2) 인코텀즈 2000 서문 9-1.

otherwise agreed."[3]를 'not cleared for export and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로 보다 간명하게 하면서, 매도인이 물품의 輸出通關節次를 이행하지 않고 또 매수인이 보내온 수거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즉, 輸出者(exporter)와 送貨人(shipper)은 買受人이 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매매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매도인이 출발시에 물품적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또 그러한 적재에 따르는 危險과 모든 費用을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賣買契約에서 이러한 취지의 明示的인 文言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였다.

둘째, 매수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輸出節次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FCA 조건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왜냐 하면,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매도인이 이를 행하고 또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수인이 보내온 수거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것에 합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FCA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when he has made the goods available at his premises(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o the buyer'란 문언을 'when he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4]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로 바꾸어 물품의 引渡場所를 보다 확대하면서 명확히 하였다.

넷째,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란 문언을 'the seller delivers'로 바꾸어 문장을 간결하게 하였으며, 'The buyer bears all costs and risks …"를 "the buyer has to bear…'로 바꾸어 매수인의 의무를 강조하였고, 'to the desired destination'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EXW 조건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5]

---

3) 매매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이는 항상 인코텀즈의 규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 인코텀즈에 묵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태여 'unless otherwise agreed'와 같은 전제조건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4) 인코텀즈 2000에서는 가능한 한 'the goods are made available'이란 말 대신에 'place the goods at the disposal'이란 말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CISG 상의 'handing over the goods'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코텀즈 2000 서문 6).

5) 신 조건의 前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장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고 또 모든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나) 賣渡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where applicable'[6]이란 문언을 추가하였다. EU나 여타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수출입 통관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내의 국가 사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였다. 즉, 수출통관이 필요없는 지역에서는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어 용어를 통일시켰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輸出許可 또는 기타 公的인 承認을 취득하는데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항은 인도에 관한 조항으로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이란 말을 추가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모든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引渡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stipulated'를 'agreed'[7]로 바꾸었다. 또한, 'if no such place or time is stipulated, at the usual place and time for delivery of such goods."란 문언을 "if no such time is agreed, at the usual[8] time for delivery of such goods. If no specific point has been agreed within the named place, and if there are several points availabl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at the place of delivery which best suits his purpose.'로 바꾸어 인도시기와 인도장소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즉, 매도인은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또는, 만약 그러한 시기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물품의 인도를 위한 通常的인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할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의무를 나타내며,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매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매도인이 출발시에 물품적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또 그러한 적재에 따르는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사정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FCA 조건을 이용하여야 한다."

6) 인코텀즈 2000 서문 14.

7) 합의는 구두, 전화, 서면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stipulate'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agree'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8) 'usual'이란 말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관행이 어떤 지침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의성실과 공정거래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 'reasonable'이라는 말보다는 'usual'이란 말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인코텀즈 서문 6).

시기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모든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買受人의 任意處分下에 積置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된 장소에서 特定地點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용가능한 여러 地點이 있다면, 매도인은 인도장소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引渡地點을 선택할 수 있다.[9]

제 5 항과 제 6 항은 危險移轉과 費用分擔에 관한 조항으로 'they hav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A4.'란 문언을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로 바꾸어,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물품의 인도시점과 일치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제 9 항은 검사, 포장, 화인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at the disposal of the buyer'를 'at the buyer's disposal'로 바꾸어 문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제 10 항은 기타의 의무로서 첫째 문장 중의 'for the exportation and/or importation'이란 문언을 'for the export and/or import'로 바꾸어 용어를 통일시켰으며, 'through another country'를 'through any country'로 바꾸었다. 'another country'는 다른 한 국가란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국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any'란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買受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where applicable'[10]이란 문언을 추가하였으며, EXW 조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의 수입통관과 제 3 국으로의 통과를 위한 통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필요한 경우에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for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the goods and, where necessary, for their transit through another country.'란 문언을 'for the export of the goods.'로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였다.

제 3 항은 運送契約 및 保險契約에 관한 조항으로 b) 항을 별도로 두어 'Contract of insurance'란 제목하에 'No obligation.'이란 문장을 추가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부보의무가 없다는 의미로서, 매수인은 자신의 이익을

9) 예컨대, EXW Seller's Factory 계약에서 매도인이 제 1, 제 2, 제 3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인도지점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공장을 선택해서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10)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위하여 물품을 부보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 부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매수인이 물품을 부보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매수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11]

제 4 항은 引渡의 受領에 관한 조항으로 'as soon as they have been placed in hi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A4'를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and A7/B7.'으로 바꾸었다. 신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7 항에서 매도인은 언제, 어디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하는가에 관한 충분한 통지를 매수인에게 주어야 하며, 매수인의 의무 제 7 항에서 매수인은 그가 합의한 기간 내에서 인도시기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인도의 수령장소에서 인도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충분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항에서는 이러한 통지에 따라 물품이 인도된 때와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물품이 인도된 때에는 매수인은 물품인도를 수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 5 항은 危險移轉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A4, provided, however, that the goods have been duly appropriated to the contract, that is to say, clearly set aside or otherwise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란 문언을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로 바꾸어 위험의 이전시점은 물품의 인도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 말미의 充當要件을 삭제하였다. 즉, 매수인은 물품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any peroid fixed for taking delivery which arise because he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provided, however, that the goods have been duly appropriated to the contract, that is to say, clearly set aside or otherwise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이란 문언을 추가하여, 매수인이 제 7 항에 따른 통지를 주지 못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物品引渡의 受領을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확정된 어떤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위험이 매수인에게 早期移轉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이 계약에 정히 充當,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特定되어 있어야 한다. EXW

11) 인코텀즈 2000 서문 10.

조건에서 이 充當要件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다른 조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물품의 선적, 발송 또는 목적지에서의 인도를 위해 매도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매수인이 의도한 대로 물품이 特定되지만, EXW 조건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매수인이 취하기 때문이다.[12]

제 6 항은 費用負擔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A4, provided, however, that the goods have been duly appropriated to the contract, that is to say, clearly set aside or otherwise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란 문언을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로 바꾸어 비용분담의 분기점은 물품의 인도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 말미의 충당요건을 삭제하였다. 즉, 매수인은 물품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둘째 문장의 말미에 충당요건을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무 제 7 항에 따라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충당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셋째 문장에 'where applicable'[13]이란 문언을 추가하고, 'other official charges'란 문언에서 'official'이란 말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賦課金이 公的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14] 또한 'upon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the goods and, where necessary for their transit through another country'란 문언을 보다 간명하게 'upon export'로 바꾸었다. 이는 EXW 조건에서 물품의 수입시 또는 제 3 국으로의 통과운송시에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제 7 항은 매도인에의 통지 조항으로 'stipulated'이란 말을 'agreed'로 바꾸었다.[15]

제 9 항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조항으로 'unless otherwise agreed'란 문언을 삭제하였으며,[16] 'the costs of pre-shipment inspection'이란 문언에서 모든 선

12) 인코텀즈 2000 서문 8.
13)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14) 부과금은 물품의 수입시 적용되는 수입관련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며, 수입과 관련하여 私的인 당사자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추가비용(예컨대 통관의무와 관련이 없는 보관료)은 이 범주에 속해서는 아니된다. (인코텀즈 2000 서문 6).
15) 주7) 참조.
16) 주3) 참조.

적전 검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any'를 추가해서 'the costs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으로 바꾸었고, '( )'를 삭제한 후,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 따라서, 매수인은 수출국의 권한에 의해 강제되는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船積前 檢査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은 다른 조건과 비교하여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2) FCA (Free Carrier … named place)

(가) 前文

인코텀즈 2000에서 가장 많이 개정된 조건이 바로 FCA 조건[17]이다. 신 조건의 前文에 나타난 主要 改正內容과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 조건은 매도인의 物品引渡場所와 引渡完了時點을 일곱 가지의 운송방식에 따라 또 화물의 양에 따라 지나치게 상세하게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소와 인도의무 완료시점 및 적재와 양하의무와 관련하여 불명확성과 불완전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18] 신 조건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또 FCA 조건에서는 인도장소에 관한 상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소, 인도완료시점 및 적재 · 양하의무와 관련하여 "선택된 인도장소는 그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와 양하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만약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적재할 책임이 있다. 만약 인도가 어떤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양하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운송터미날과 컨테이너의 정의규정을 삭제하였다.[19]

셋째, 매도인의 引渡地點 選擇權과 運送契約締結義務에 관한 내용을 本文으

17)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에 FOB 조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71 %나 된다. 따라서 인코텀즈 2000은 서문 18에서 물품의 운송이 컨테이너 운송, RO-RO 운송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FOB 조건 대신에 FCA 조건을 이용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FOB 조건을 이용하면 매도인은 물품이 CY 등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선적될 때까지 물품에 관한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물품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8) Working paper 'FCA(RDR-04)' 참조.

19) 운송터미날과 컨테이너의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로 옮겨 前文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하였다.

넷째, 'for any mode of transport'란 문언을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란 문언으로 바꾸어, FCA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예컨대 살화물(bulk cargo)과 같이 물품이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하여 선적되는 해상운송인 경우에는 FOB 조건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FOB 조건은 존속가치가 충분히 있다.

다섯째, 첫째 문단 첫째 문장 중의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he has handed over the goods'란 문언을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로, '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란 문언을 'to the carrier'로, 'named by the buyer'를 'nominated by the buyer'로 바꾼 뒤, 'at the named place or point'란 문언 중에서 'or point'를 삭제하였다. 또한, 셋째 문단 첫째 문장 중의 'the performance of carriage'를 'the performance of transport'로 바꾸었고, 'sea, air'를 순서를 바꾸어 'air, sea'로 하였다. 둘째 문장인 "If the buyer instructs the seller to deliver the cargo to a person, e.g. a freight forwarder who is not a 'carrier'"을 'If the buyer nominates a person other than a carrier to receive the goods'로, 'in the custody of'를 'delivered to'로 바꾸었다. 이러한 개정은 용어를 통일시키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20]

(나) 賣渡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where applicable'이란 문언을 추가하였으며,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21]

제 3 항은 運送契約 및 保險契約에 관한 조항으로 a) 호에 'In either case'란 문언을 추가하여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20) 신 조건의 前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송인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명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된 인도장소는 그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와 양하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만약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적재할 책임이 있다. 만약 인도가 어떤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양하할 책임이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한다면, 매도인은 물품을 그 지명된 사람에게 인도할 때 자신의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1)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경우와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는 상관행이 있고 또 매수인이 적절한 때 반대의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에서' 매도인은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취지를 신속히 통지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제 4 항은 인도에 관한 조항으로 기존의 일곱 가지의 운송방식별 물품인도장소 내지 인도완료시점에 관한 규정 모두를 삭제하고 대신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인 경우와 다른 어떤 장소인 경우로 양분하여 "인도는 다음과 같이 완료된다. 첫째, 만약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이면, 물품이 매수인 또는 그를 대리한 다른 사람이 지명한 운송인에 의해 제공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이다.[22] 둘째, 만약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 이외의 다른 어떤 장소이면,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지 않은 상태[23]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의무 제 3 항 a) 호에 따라 매도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前文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소와 인도완료시점을 보다 단순하면서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또한, 첫째 문단 첫째 문장 중의 '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를 'to the carrier'로 바꾸었고, '(e.g. a freight forwarder)'란 말을 삭제하였다. 또 'named by the buyer'를 'nominated by the buyer'로 바꾸었고, 'or point (e.g. transport terminal or other receiving point)'란 문언과 'and in the manner agreed or customary at such point'란 문언을 삭제하였다. 둘째 문장 중에 'within the named place'란 문언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셋째 문장 중에 'to the carrier'를 'for carriage'로, 'of that carrier and'를 'and/or'로 바꾸어, 용어를 통일시키고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즉, 매도인은 인도를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하거나, 또는 매도인의 의무 제 3 항 a) 호에 따라 매도인이 선택한 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완료된다. 첫째, 만약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이면, 물품이 매수인 또는 그를 대리한 다른 사람이 지명한 운송인에 의해 제공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이다. 둘째, 만약 지정된

22)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여야 할 이유로는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할 인적, 물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3) 매도인은 물품을 양화시킬 인적, 물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 이외의 다른 어떤 장소이면,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의무 제3항 a) 호에 따라 매도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이다. 만약 특정지점이 지정된 장소 내에서 합의되지 않았거나, 또한 만약 이용가능한 여러 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인도장소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특정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수인으로부터의 정확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방식 및/또는 수량 및/또는 성질상 요구되는 방법으로 운송을 위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제6항은 비용분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to the carrier'를 삭제하고, 'and'를 추가하였다. 둘째 문장 중에 'where applicable'이란 문언을 추가하였으며, 'official'이란 말을 삭제한 후,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24]

제7항은 매수인에의 통지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를 'in accordance with A4'로, 둘째 문장 중의 'take the goods into his charge'란 말을 'to take delivery in accordance with A4'로 바꾸었다.

제8항은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상응하는 전자식 서류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if customary'란 문언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FCA 조건에서 매도인은 당연히 인도의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with the usual document in proof of delivery'란 문언을 'with the usual proof of delivery'로 바꾸는데, 이는 매수인의 의무 제8항과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함이며, EDI 방식에 의한 서류도 포괄하고 있다.

제9항은 검사, 포장, 화인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to the carrier'를 'in accordance with A4'로 바꾸었다.

제10항은 기타의 의무로서 첫째 문장 중의 'importation'이란 말을 'import'로, 'another country'를 'any country'로 바꾸었다.[25]

(다) 買受人의 義務

제2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였으며,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고, 'where necessary'란

24)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2항과 매수인의 의무 제6항 참조.
25)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10항 참조.

말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란 말을 'any country'란 말로 바꾸었다.[26]

제 3 항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a) 호 중의 'except as provided for in A3 a)'란 문언을 'except when the contract of carriage is made by the seller as provided for in A3 a)'로 바꾸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b) 호를 별도로 두어 'Contract of insurance'란 제목하에 'No obligation.'이란 문장을 추가하였다.[27]

제 4 항은 인도의 수령에 관한 조항으로 'when they have been delivered'란 문언을 추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물품이 인도된 때 물품인도를 수령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제 5 항은 위험이전에 관한 조항으로 둘째 문장 중의 'Should he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or should the carrier named by him fail to take the goods into his charge, bear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any period stipulated for delivery'란 문언을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any agreed peroid for delivery which arise either because he fails to nominate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in accordance with A4, or because the carrier or the party nominated by the buyer fails to take the goods into his charge at the agreed time, or because the buyer fails to give appropriat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이란 문언으로 바꾸었다. 즉, 매수인은 물품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매도인은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에 따라 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을 지명하지 못함으로써, 또는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당사자가 합의된 시기에 자신의 관리하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또는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 제 7 항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에 대해서, 매수인은 인도를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어떤 합의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당요건이 적용된다.

제 6 항은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from the time when'

---

26)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과 제 10 항 참조.
27) EXW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3 항 참조.

에서 'when'을 삭제하고 말미에 'and'를 추가하였다. 둘째 문장 중의 'to name the carrier'란 문언을 'to nominate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in accordance with A4'란 문언으로 바꾸었으며, 'or the carrier named by him'이란 문언을 'or because the party nominated by the buyer'란 문언으로 바꾸었다. 셋째 문장에 'where applicable'이란 문언을 추가하고, 'other official charges'란 문언에서 'official'이란 말을 삭제하였으며,[28]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다. 또 'where necessary'란 문언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란 말을 'any country'란 말로 바꾸었다.[29]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물품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30]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을 지명하지 못함으로써, 또는 매수인이 지명한 그 당사자가 합의된 시기에 자신의 관리하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또는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 제 7 항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충당요건이 적용된다. 그리고 매수인은,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입시 그리고 모든 국가로의 통과운송을 위하여 지급되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항은 매도인에의 통지 조항으로 'the name of the carrier'란 문언을 'the name of the party designated in A4'란 문언으로 바꾸었고, 'of the point'란 문언에서 'of'란 말을 삭제한 후, 'to the carrier'란 문언을 'to that carrier'로 바꾸었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서 예정된 당사자(운송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에 관한 충분한 통지를 주어야 하며 또, 필요한 경우, 운송방식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일자 또는 기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당사자에게 물품이 인도되어야 할 장소 내의 지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9 항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조항으로 'unless otherwise agreed'란 문언을

---

28)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과 매수인의 의무 제 6 항 참조.

29)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10 항 참조.

30) 國際商業會議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터미널취급료(terminal handling charge: THC)의 분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이 53%에 이르며, 주로 누가 THC를 부담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THC는 장소와 때에 따라 분담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계약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담되는지를 매매계약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인코텀즈 2000 서문 11). 예컨대, 'FCA costs up to ship's side for seller's account unless included in freight'와 같은 조항을 두어 THC가 매도인의 부담임을 특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삭제하였으며,[31] 'the costs of pre-shipment inspection'이란 문언에서 모든 선적전 검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any'를 추가해서 'the costs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로 바꾸었고, 'such inspection is'란 문언을 추가한 후,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 따라서 매수인은 船積前 檢査가 수출국의 권한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적전 검사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CPT (Carriag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

(가) 前文

첫째, 첫째 문단 첫째 문장 중의 'the seller pays the freigh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이란 문언을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으로 바꾸어, 매도인은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매도인은 이에 더하여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갖다 두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CPT 조건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둘째, 첫째 문단 둘째 문장인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carrier is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를 'This means that the buyer bears all risks and any other costs occurring after the goods have been so delivered.'로 바꾸어 문장을 보다 간결하게 하였다.

셋째, 둘째 문단 중의 'the performance of carriage'를 'the performance of transport'로 바꾼 뒤, 'sea, air'란 순서를 'air, sea'란 순서로 바꾸었다.

넷째, 마지막 문단 중의 'for any mode of transport'를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로 바꾸어 CPT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32] 그렇지만, 예컨대 살화물과 같이 물품이

31) 주3) 참조.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하여 선적되는 해상운송인 경우에는 CFR 조건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CFR 조건은 존속가치가 충분히 있다.

(나) 賣渡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where applicable'이란 문언을 추가하였으며,[33]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

제 4 항은 인도에 관한 조항으로 '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or'란 문언을 'to the carrier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3 or'로 바꾸었고, 'carrier, to the'에서 ','를 삭제하였다. 또 'for transportation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란 문언을 'for transport to the agreed point at the named place'로 바꾸었고, 'within the period stipulated'이란 문언을 'within the agreed period'란 문언으로 바꾸었다.[34] 즉, 매도인은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의 합의된 지점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의무 제 3 항에 따라 체결된 운송인에게 또는, 연속 운송인이 있다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정된 장소에서의 합의된 지점'으로 하여, 물품이 운송될 장소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는 또한 매도인의 의무 제 3 항 a) 호의 규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제 6 항은 비용분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인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3 a), as well as costs of loading the goods and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which may be included in the freight or incurred by the seller when contracting for carriage'를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such time as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as well as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32) 신 조건의 前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송비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은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매도인은 이에 더하여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 갖다 두는데 필요한 운송비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그렇게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함을 의미한다.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연속 운송인이 이용된다면,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한다. CPT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다."

33)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34) 주 7) 참조.

A3 a),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and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which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nd'로 바꾸었다. 둘째 문장 중에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였으며, 'official'이란 말을 삭제한 후,[35]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 또한 'and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 if they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란 문언을 말미에 추가하였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제 6 항을 제외하고는, 물품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물론 운송계약에 의해 매도인의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목적장소에서 물품의 적재비용과 물품의 양하에 관한 모든 부과금을 포함해서, 매도인의 의무 제 3 항 a) 호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도 지급하여야 하며,[36] 또한 매도인은, 자신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의 비용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데 지급되는, 그리고 운송계약에 의해 매도인의 계정으로 되어 있다면 모든 국가로의 통과운송과 관련된 모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조건의 특징은 첫째, 매도인은 물품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매도인의 의무 제 3 항 a) 호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도 지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목적장소에서 물품의 적재비용과 물품의 양하에 관한 모든 부과금 및 통과운송시의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의무를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내용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 조건은 매도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구 조건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8 항은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상응하는 전자식 서류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에 'or documents'란 말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연속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을 담보하는 통운송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는 운송구간만을 담보하는 운송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매도

35)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과 매수인의 의무 제 6 항 참조.

36) 그러나 예컨대, 빙하, 혼잡, 노동방해, 정부명령, 전쟁 또는 전쟁유사행위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환적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에 의거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추가적인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왜냐 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통상적인 운송계약을 취득하는데 까지만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코텀즈 2000 서문 9-3).

인은 후속 운송인이 발급하는 운송서류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수의 운송서류가 개입된다. 따라서 'or documents'란 말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말미에 'for the transport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3'란 문언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CPT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연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제 10 항은 기타의 의무로서 첫째 문장 중의 'importation'이란 말을 'import'로 바꾸고, 'where necessary'란 문언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를 'any country'로 바꾸었다.[37]

(다) 買受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였으며,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고,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란 말을 'any country'란 말로 바꾸었다.[38]

제 3 항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b) 호를 별도로 두어 'Contract of insurance'란 제목하에 'No obligation'"이란 문장을 추가하였다.[39]

제 4 항은 인도의 수령에 관한 조항으로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란 문언에서 'of destination'이란 말을 삭제하였다. 이는 지정장소가 물품의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제 6 항은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 중의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have been included in the freight or incurred by the seller when contracting for carriage in accordance with A3 a)'란 문언을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란 문언으로 바꾸었으며, 'as well as unloading costs'란 문언을 'unloading costs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nd'로 바꾸었다.

둘째 문단인 'Should he fail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pay the additional costs thereby incurred for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the period fixed for dispatch provided, however, that the

37)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10 항 참조.
38)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과 제 10 항 참조.
39) EXW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3 항 참조.

goods have been duly appropriated to the contract, that is to say, clearly set aside or otherwise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를 'all additional costs incurred if he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for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the period fixed for dispatch, provided, however, that the goods have been duly appropriated to the contract, that is to say, clearly set aside or otherwise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and'로 바꾸었다.

셋째 문단 중에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고, 'other official charges'란 문언에서 'official'이란 말을 삭제하였으며,[40]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다. 또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란 말을 'any country'란 말로 바꾸었으며,[41] 'unless included within the cost of the contract of carriage'란 문언을 말미에 추가하였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3항 a)호를 제외하고는, 물품이 매도인의 의무 제4항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물품이 합의된 목적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 중에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과 부과금이 운송계약하에서 매도인의 계정으로 되어 있다면 이들은 매도인의 부담이 된다. 그리고 매수인은 운송계약하에서 매도인의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 제7항에 따라 통지를 주지 못하였다면 발송을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확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물품에 발생한 모든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충당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매수인은, 자신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물품의 수입시 지급되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및 운송계약의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국가로의 통과운송을 위한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조건의 특징은 첫째,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합의된 목적장소에의 도착시까지 운송 중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 및 부과금, 양하비용, 통과운송시의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의무를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내용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 조건은 매수인의

40)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2항과 매수인의 의무 제6항 참조.
41)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10항 참조.

비용부담에 관하여 구 조건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9 항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조항으로 'unless otherwise agreed'를 삭제하고, 'pre-shipment inspection'을 'any pre-shipment inspection'바꾸었고, 'such inspection is'란 문언을 추가한 후,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42]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

(가) 前文

첫째, 첫째 문단 첫째 문장 중의 전반부인 'the seller has the same obligations as under CPT'란 문언을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으로 바꾸어, 매도인은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매도인은 이에 더하여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 갖다 두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CIP 조건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한 후, 후반부인 'but with the addition that the seller has to procure cargo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란 문언을 'This means that the buyer bears all risks and any additional costs occurring after the goods have been so delivered.'와 'However, in CIP the seller also has to procure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로 문장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Consequently'란 말을 추가하였다.

둘째, 둘째 문단 중의 'the seller is only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 minimum coverage'란 문언을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로 바꾸어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만 부보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후,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the protection of greater cover, he would either need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hi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란 문장을 추가하여, 매수인이 보다 큰 담보조건을 통하여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

42) FCA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9 항 참조.

를 통하든가 또는 매수인 자신이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구 조건에 없던 운송인의 정의 개념('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transport, by rail, road, air, sea,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과 연속 운송인이 개입되었을 경우 위험이전에 관한 내용(If subsequent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the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을 추가하였다.

넷째, 마지막 문단 중의 'for any mode of transport'를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로 바꾸어 CIP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43] 그렇지만, 예컨대 살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의 선측난간을 통하여 선적되는 해상운송인 경우에는 CIF 조건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CIF 조건은 존속가치가 충분히 있다.

(나) 賣渡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where applicable'이란 문언을 추가하였으며,[44]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

제 3 항 b) 호는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 중의 'that the buyer'

---

43) 신 조건의 前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은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매도인은 이에 더하여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 갖다 두는데 필요한 운송비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그렇게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에게 최소담보조건으로만 부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수인은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보다 큰 담보조건을 통하여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그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합의해 두거나 또는 매수인 자신이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연속 운송인이 이용된다면,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한다. CIP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다."

44)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란 문언을 'such that the buyer'로 하여 문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제 4 항은 인도에 관한 조항으로 '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or'란 문언을 'to the carrier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3 or'로 바꾸었고, 'carrier, to the'에서 ','를 삭제하였다. 또 'for transportation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란 문언을 'for transport to the agreed point at the named place'로 바꾸었고, 'within the period stipulated'이란 문언을 'within the agreed period'란 문언으로 바꾸었다.[45]

제 6 항은 비용분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인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3, as well as costs of loading the goods and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which may be included in the freight or incurred by the seller when contracting for carriage'를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such time as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as well as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3 a), including the costs of loading the goods and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which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nd'로 바꾼 후, 'the costs of insurance resulting from A3 b); and'란 문언을 추가하였다. 둘째 문장 중에 'where applicable'이란 문언을 추가하였으며, 'official'이란 말을 삭제한 후,[46]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 또한 'and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 if they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란 문언을 말미에 추가하였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제 6 항을 제외하고는, 물품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물론 운송계약에 의해 매도인의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목적장소에서 물품의 적재비용과 물품의 양하에 관한 모든 부과금을 포함해서, 매도인의 의무 제 3 항 a) 호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 제 3 항 b) 호에 따른 보험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자신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의 비용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데 지급되는, 그리고 운송계약에 의해 매도인의 계정으로 되어 있다면 모든 국가로의 통과운송과 관련

45) CPT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 참조.
46)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과 매수인의 의무 제 6 항 참조.

된 모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47]

제 8 항은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상응하는 전자식 서류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에 'or documents'란 문언을 추가하고, 그 말미에 'for the transport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A3'란 문언을 추가하였다.[48]

제 10 항은 기타의 의무로서 첫째 문장 중의 'importation'이란 말을 'import'로 바꾸고,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를 'any country'로 바꾸었다.[49] 그리고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upon request,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procuring any additional insurance.'란 문장을 추가하였다. 이는 매도인이 체결하는 최소담보조건 이외에 매수인이 추가적으로 부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설하였다.

(다) 買受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였으며,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고,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란 말을 'any country'란 말로 바꾸었다.[50]

제 3 항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b) 호를 별도로 두어 'Contract of insurance'란 제목하에 'No obligation.'이란 문장을 추가하였다.[51]

제 4 항은 인도의 수령에 관한 조항으로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란 문언에서 'of destination'이란 말을 삭제하였다.[52]

제 6 항은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 중의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3'란 문언을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3 a)'로 바꾼 후,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have been included in the freight or incurred by the seller when contracting for carriage in accordance with A3 a)'란 문언을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란 문언으로 바꾸었으며, 'as well as unloading costs'란 문언을 'unloading costs unless such costs and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47) CPT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6 항 참조.
48) CPT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8 항 참조.
49)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10 항 참조.
50)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과 제 10 항 참조.
51) EXW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3 항 참조.
52) CPT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4 항 참조.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nd'로 바꾸었다.

둘째 문단인 'Should he fail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pay the additional costs thereby incurred for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the period fixed for dispatch provided, however, that the goods have been duly appropriated to the contract, that is to say, clearly set aside or otherwise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를 'all additional costs incurred if he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for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the period fixed for dispatch, provided, however, that the goods have been duly appropriated to the contract, that is to say, clearly set aside or otherwise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and'로 바꾸었다.

셋째 문단 중에 'where applicable'을 추가하고, 'other official charges'란 문언에서 'official'이란 말을 삭제하였으며,[53]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다. 또한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란 말을 'any country'란 말로 바꾸었으며,[54] 'unless included within the cost of the contract of carriage'란 문언을 말미에 추가하였다.[55]

제 9 항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조항으로 'unless otherwise agreed'를 삭제하고, 'pre-shipment inspection'을 'any pre-shipment inspection'으로 바꾸었고, 'such inspection is'란 문언을 추가한 후,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56]

제 10 항은 기타의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for procuring insurance'란 문언을 'for procuring any additional insurance'란 문언으로 바꾸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모든 추가 보험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해 주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

53)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과 매수인의 의무 제 6 항 참조.
54)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10 항 참조.
55) CPT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6 항 참조.
56) FCA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9 항 참조.

2. 到着地 引渡條件

(1) DAF (Delivered At Frontier … named place)

(가) 前文

DAF 조건은 인코텀즈 2000의 개정작업시에 그 존폐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된 의견이 많이 나온 조건이다. 상당한 수의 국가들은 인코텀즈 2000에서 이 조건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57] 國際商業會議所는 중앙유럽과 동유럽 사이의 무역과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및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의 무역 등에서 이 조건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인코텀즈 2000에 DAF 조건을 존속시키기로 하였다.[58]

前文의 主要 改正內容으로는 첫째, 첫째 문단 첫째 문장 중의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s to deliver when the goods have been made available, cleared for ex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란 문언을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59]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cleared for export but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란 문언으로 바꾸어, 매도인이 인도장소에 도착한 물품을 양하시킬 의무와 물품의 수입통관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신 조건에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be responsible for the unloading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nd to bear the risks and costs of unloading,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이란 문장을 추가하여 "매매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에게 운송의 도착수단에서 물품의 양하에 따른 책

---

57) 인코텀즈 2000에 DAF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국가들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캐나다 등이며, 그 삭제를 주장한 국가들은 중국, 사이프러스, 필란드, 체코, 인도, 이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58) 만약 남북한 사이에 교역이 활성화되고 판문점 부근에 물류단지가 조성된다면, 남북한 사이의 무역에 DAF 조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59) 주 4) 참조.

임을 부담시키고 또 그 양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매매계약에 추가함으로써 이 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고 하여 매매계약당사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셋째, 마지막 문단인 "The term is primarily intended to be used when goods are to be carried by rail or road, but it may be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란 문장을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when goods are to be delivered at a land frontier."란 문장으로 바꾼 후, 말미에 "When delivery is to take place in the port of destination, on board a vessel or on the quay(wharf), the DES or DEQ terms should be used."란 문장을 추가하여, 물품을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지만, 물품의 인도가 목적항에서 선박상이나 또는 부두상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DAF 조건 대신에 DES 조건이나 DEQ 조건을 이용하도록 하였다.[60]

(나) **賣渡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였으며,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 그리고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를 'any country'로 바꾸었다.[61]

제 3 항 a) 호는 운송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 중의 'by a usual route and in a customary manner'란 문언을 삭제하고, 'to the named point' 다음에 'if any'란 말을 추가하였으며, 말미의 '(including, if necessary, for their transit through another country)'란 문언을 삭제한 후, 둘째 문단을 첫째 문단

60) 신 조건의 前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경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수출통관된, 그러나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을 국경의 지정된 지점과 장소에서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운송의 도착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한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란 용어는 수출국가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되는 국경을 정확히 정의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매매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에게 운송의 도착수단에서 물품의 양하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고 또 그 양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매매계약에 추가함으로써 이 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다. 인도가 목적항에서 선박상이나 또는 부두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DES 조건이나 또는 DEQ 조건을 이용하여야 한다."

61)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과 제 10 항 참조.

과 합하여 i) 목으로 두었다. 그리고 신 조건에 "ii) However, if requested by the buyer, the seller may agree to contract on usual terms at the buyer's risk and expense for the on-going carriage of the goods beyond the named place at the frontier to the final destination in the country of import named by the buyer. The seller may decline to make the contract and, if he does, shall promptly notify the buyer accordingly."란 ii) 목을 추가하였다. 즉, 매도인의 운송계약체결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매도인은 국경에 있는 인도장소의 지정된 지점(있을 경우)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경에 있는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어떤 지점이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행에 의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로,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국경에 있는 지정된 장소를 지나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 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통상적인 조건으로 물품의 연계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매도인은 그러한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가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면, 그는 매수인에게 그 취지를 신속하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 4 항은 인도에 관한 조항으로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이란 문언을 추가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의 도착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wthin the period stipulated'이란 문언을 'within the agreed period'란 문언으로 바꾸었다.[62]

제 6 항은 비용분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in addition to the costs resulting from A3 a),'란 문언을 앞부분으로 옮긴 후 'as well as'란 말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all costs of the goods'란 문언을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란 문언으로 바꾸었고, 'until'을 'until such time as'로 바꾼 후, 'the expenses of discharge operations (including lighterage and handling charges), if it is necessary or customary for the goods to be discharged on their arrival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t the frontier, in order to place them at the buyer's disposal'이란 문언을 삭제하였는데, 삭제이유는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의 도착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장

62) 주 7) 참조.

중에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였고,[63]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 또한 'official'과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한 후, 'of the goods'란 문언을 추가하였으며, 'another country'란 말을 'any country'란 말로 바꾸었다.[64] 즉,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제 6 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무 제 3 항 a) 호에 따른 비용에 더하여 물품이 자신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매도인은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비용 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출시와 자신의 의무 제 4 항에 따라 인도가 있기 전까지 모든 국가로의 통과운송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항은 매수인에의 통지에 관한 조항으로 마지막 문언인 'to take the goods'를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로 바꾸어, 물품인도의 수령이란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제 8 항은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상응하는 전자식 서류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을 i) 목으로 바꾼 후, 말미에 'in accordance with A3 a) i)'란 문언을 추가하였다.

둘째 문단을 ii) 목으로 바꾼 후 'should the parties agree on on-going carriage beyond the frontier in accordance with A3 a) ii),'란 문언을 추가한 후, 'a through document of transport'란 문언을 'the through document of transport'란 문언으로,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다. 따라서 매도인이 국경에 있는 인도장소의 지정된 지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국경에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의 인도를 증명하는 통상적인 서류 또는 기타의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국경에 있는 지정된 장소를 지나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 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의 연계운송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으로 발송국가의 발송지점에서부터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 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통상적인 조건으로 물품의 운송을 카바하는 발송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통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항은 기타의 의무로서 첫째 문장 중의 'importation'이란 말을 'import'

63)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64)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10 항 참조.

로 바꾸고, 'another country'를 'any country'로 바꾸었다.[65]

(다) 買受人의 義務

제2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or other documents'와 'where applicable'이란 문언을 추가하고,[66] 'at the named point of delivery at the frontier or elsewhere'란 문언을 삭제하였으며, 'for the importation of the goods'란 문언을 'necessary for the import of the goods'로 바꾼 후,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하였다. 즉,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 승인 또는 기타의 서류를 취득하여야 하며, 또 수입통관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물품의 수입과 연속되는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b)호를 별도로 두어 'Contract of insurance'란 제목하에 'No obligation.'이란 문장을 추가하였다.[67]

제4항은 인도의 수령에 관한 조항으로 'as soon as'를 'when'으로, 'placed'를 'delivered'로 바꾸었다.

제5항은 위험이전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 중의 'placed at his disposal'이란 문언을 'delivered'로, 둘째 문단 중의 'the period stipulated'이란 말을 'the agreed period'로 바꾸었다.

제6항은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 중의 'placed at his disposal'이란 문언을 'delivered'로 바꾸었고, 말미에 'including the expenses of unloading necessary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t the frontier; and'란 문언을 추가하여, 매수인이 국경에 있는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운송의 도착수단으로부터 물품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양하비용도 지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문단 중의 'bear all additional costs incurred thereby'란 문언을 'all additional costs incurred'로 바꾸어 앞부분으로 옮긴 후, 'Should he fail to'를 'if he fails to'로, 'placed at his disposal'을 'delivered'로 바꾸고, 말미에 'and'를 추가하였다.

---

65)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10항 참조.
66)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2항 참조.
67) EXW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3항 참조.

셋째 문단 중에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고,[68] 'all duties, taxes and other official charges as well as the cost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란 문언을 'the costs of customs formalities as well as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란 문언으로 바꾸었다. 또한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꾼 후,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하였다.

제 7 항은 매도인에의 통지에 관한 조항으로 'within a stipulated period'란 말을 'within an agreed period'란 말로,[69] 'the place of taking delivery'란 문언을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at the named place'로 바꾸어, 인도수령의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수령의 지점에 관한 충분한 통지를 주도록 하였다.

제 9 항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조항으로 'unless otherwise agreed'를 삭제한 후, 'pre-shipment inspection'을 'any pre-shipment inspection'으로 바꾸었고, 'such inspection is'란 문언을 추가한 후,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70]

제 10 항은 기타의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둘째 문단 중에 'according to A3 a) ii)'란 문언을 추가하였고, 'importation'을 'import'로, 'A8'을 'A8 ii)'로 바꾸었다. 즉, 매도인이 국경에 있는 지정된 장소를 지나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 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의 연계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외국환관리인증, 면장, 기타의 서류 또는 이들의 증명된 사본을 매도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매도인의 의무 제 8 항 ii) 목에 규정된 통운송서류 또는 기타의 모든 서류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입국에 있는 물품의 최종 목적지의 주소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DDU (Delivered Duty Un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가) 前文

첫째, 첫째 문단 첫째 문장 중의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s to deliver when the goods have been made available at the named place in the

68)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69) 주 7) 참조.
70) FCA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9 항 참조.

country of importation'이란 문언을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란 문언으로 바꾸어, DDU 조건[71]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장소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고 또 운송의 모든 도착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문장 중의 '(excluding duties, taxes and other official charges payable upon importation as well as the costs and risk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란 문언을 'other than, where applicable,[72] any "duty" (which term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risks of the carrying out of customs formalities, and the payment of formaliti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으로 바꾸어,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의 모든 수입'관세'에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아울러 '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그 절차에 따른 지급, 관세, 조세 및 기타의 부과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문장인 "The buyer has to pay any additional costs and to bear any risks caused by his failure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in time."이란 문장을 "Such 'duty' has to be borne by the buyer as well as any costs and risks caused by his failure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in time."으로 바꾸어,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과 매수인이 適期에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73]

둘째, 둘째 문단 첫째 문장 중에 'However'란 어휘를 추가한 후, 'this has to be made clear by adding words to this effect'란 문언을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이란 문언으로 바꾸었다. 둘째 문장인 "If the parties wish to include in the seller's obligations some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ation of the

---

71) 스위스에서는 DDU 조건에 의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ICC 스위스 국내위원회가 ICC 본부로 보낸 1999. 3. 10 일자 서신 참조).

72)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73) 매도인은 매수인이 하기로 되어있는 물품의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에서는 DDU 조건의 이용을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인코텀즈 2000 서문 9-4).

goods(such as value added tax(VAT),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words to this effect: 'Delivered duty unpaid, VAT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을 보다 간결하게 'as well as some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로 하여 신 조건 둘째 문단 첫째 문장 중에 넣어 통합하였다. 셋째 문장의 말미에 'but when delivery is to take place in the port of destination on board the vessel or on the quay(wharf), the DES or DEQ terms should be used'란 문언을 추가하여, DDU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지만 물품인도가 선박상에서 또는 부두에서와 같이 목적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DES 조건이나 또는 DEQ 조건을 이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74]

(나) **賣渡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or other documents'와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였으며, 'for the exportation of the goods'를 'necessary for the export of the goods'로 바꾸었고,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를 'any country'로 바꾸었다.[75]

제 3 항 a) 호는 운송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on usual terms'와 'by a usual route and in the customary manner'란 문언을 삭제하고, 'to the agreed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란 문언을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으로 바꾸었다. 둘째 문장 중에 'a point'를 'a specific point'로 바꾸었다.

제 4 항은 인도에 관한 조항으로 'in accordance with A3 on the date or

---

74) 신 조건의 前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미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장소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또 운송의 모든 도착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그 절차에 따른 지급, 관세, 조세 및 기타의 부과금을 포함한다) 이외에,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장소에 물품을 갖다 두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적기에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물론 그러한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매매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물론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매매계약에 추가함으로써 이 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선박상에서 또는 부두에서와 같이 목적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DES 조건이나 또는 DEQ 조건을 이용하여야 한다."

75)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과 제 10 항 참조.

within the period stipulated'이란 문언을 'or at that of another person named by the buyer, on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n the date or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delivery'란 문언으로 바꾸었다. 즉, 매도인은 인도를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목적장소에서 운송의 모든 도착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지명한 다른 사람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매수인이 지명한 다른 사람'이라 함은 예컨대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도착지에서의 CY나 CFS의 운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6 항은 비용분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말미에 'and'를 추가하였다. 둘째 문장 중에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였고,[76]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으며, 'official'이란 말을 삭제하였다.[77] 또 'upon exportation'을 'upon export'로 바꾼 후,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하였으며, 'another country'를 'any country'로 바꾸었다.[78]

제 7 항은 매수인에의 통지에 관한 조항으로 'to take the goods'를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로 바꾸어, 물품인도의 수령이란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제 8 항은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상응하는 전자식 서류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Provide at his own expense'란 문언을 'provide the buyer at the seller's expense'로 바꾸었고, 말미에 'in accordance with A4/B4'란 문언을 추가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통상적인 운송서류 등은 매도인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제 10 항은 기타의 의무로서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A8'이란 문언을 ( )로 처리하였고,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다.

(다) 買受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or other documents'와 'where applicable'이란 문언을 추가하고,[79]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다.

---

76)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77) EXW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6 항 참조.
78)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10 항 참조.

제 3 항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b) 호를 별도로 두어 'Contract of insurance'란 제목하에 'No obligation'"이란 문장을 추가하였다.[80]

제 4 항은 인도의 수령에 관한 조항으로 'as soon as'를 'when'으로, 'placed at his disposal'을 'delivered'로 바꾸었다.

제 5 항은 위험이전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 중의 'placed at his disposal'이란 문언을 'delivered'로 바꾸었다. 둘째 문단 중의 'the period stipulated'이란 문언을 'the agreed period'로 바꾼 후,[81] 한 문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여,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早期 移轉하는 경우에 충당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 6 항은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 중의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 named point of destination'이란 문언을 'delivered'로 바꾼 후, 말미에 'and'를 추가하였다. 둘째 문단 중의 'bear all additional costs incurred thereby'란 문언을 'all additional costs incurred'로 바꾸어 앞부분으로 옮긴 후, 'Should he fail to'를 'if he fails to'로 바꾸었고, 또 'o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A4'란 문언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한 때부터는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은 당연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 문언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미에 'and'를 추가하였다. 셋째 문단 중에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추가하고,[82] 'all duties, taxes and other official charges as well as the cost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란 문언을 'the costs of customs formalities as well as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란 문언으로 바꾸었으며,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다.

제 7 항은 매도인에의 통지에 관한 조항으로 'stipulated period'란 말을 'agreed period'란 말로,[83] 'the place of taking delivery'란 문언을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at the named place'로 바꾸어, 인도수령의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수령의 지점에 관한 충분한 통지를 주도록 하였다.

---

79)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80) EXW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3 항 참조.
81) 주 7) 참조.
82)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83) 주 7) 참조.

제 9 항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조항으로 'unless otherwise agreed'를 삭제한 후, 'pre-shipment inspection'을 'any pre-shipment inspection'으로 바꾸었고, 'such inspection is'란 문언을 추가하였으며,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84]

(2) DDP (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가) 前文

첫째, 첫째 문단 첫째 문장 중의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s to deliver when the goods have been made available at the named place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이란 문언을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란 문언으로 바꾸어, DDP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장소에서 수입통관이 되고 또 운송의 모든 도착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문장인 'The seller has to bear the risks and costs, including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delivering the goods thereto, cleared for importation'이란 문언을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hereto including, where applicable,[85] any "duty" (which term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risks of the carrying out of customs formalities and the payment of formaliti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으로 바꾸어,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의 모든 수입'관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아울러 '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그 절차에 따른 지급, 관세, 조세 및 기타의 부과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셋째 문단인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ation and to pay the duty, the term DDU should be used.'를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bear all risks and costs for the import, the DDU

84) FCA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9 항 참조.
85)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term should be used.'로 바꾸어 신 조건에서는 다섯 째 문단으로 하였다. 또 셋째 문단 중에 'However'란 어휘를 추가한 후, 'importation'을 'import'로, '(such as value added tax(VAT))'를 '(such as value-added tax : VAT)'로 바꾸었고, 또 "by adding words to this effect :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란 문언을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이란 문언으로 바꾸었다.

셋째, 마지막 문단의 말미에 'but when delivery is to take place in the port of destination on board the vessel or on the quay(wharf), the DES or DEQ terms should be used'란 문언을 추가하여, DDP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지만 물품인도가 선박상에서 또는 부두에서와 같이 목적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DES 조건이나 또는 DEQ 조건을 이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86]

(나) 賣渡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or other documents'와 'where applicable'이란 문언을 추가하였으며, 'for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the goods'를 'necessary for the export of the goods'로 바꾸었다. 또 'where necessary'란 말을 삭제한 후, 'another country'를 'any country'로 바꾸었으며,[87] 말미에 'and for their import'란 문언을 추가하였다.

제 3 항 a) 호는 운송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중의 'by a usual route and in the customary manner'란 문언을 삭제하고, 'to the agreed point at the

86) 신 조건의 前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장소에서 수입통관이 되고 또 운송의 모든 도착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그 절차에 따른 지급, 관세, 조세 및 기타의 부과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장소에 물품을 갖다 두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 조건이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나타내는 반면에, DDP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만약 매매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예컨대 부가가치세)을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매매계약에 추가함으로써 이 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만약 매매계약당사자들이 매수인에게 수입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기를 원한다면, DDU 조건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선박상에서 또는 부두에서와 같이 목적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DES 조건이나 또는 DEQ 조건을 이용하여야 한다."

87)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과 제 10 항 참조.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란 문언을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으로 바꾸었다. 둘째 문장 중에 'a point'를 'a specific point'로 바꾸었다.

제 4 항은 인도에 관한 조항으로 'in accordance with A3 on the date or within the period stipulated'이란 문언을 ',or at that of another person named by the buyer, on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n the date or within the period agreed for delivery'란 문언으로 바꾸었다.[88]

제 6 항은 비용분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말미에 'and'를 추가하였다. 둘째 문장 중에 'where applicable'[89]이란 말과 'necessary for export and import'란 말을 추가하였고, 'official'을 삭제하였다.[90] 또 'exportation and importation'을 'export and import'로 바꾸었으며, 'unless otherwise agreed' 와[91] 'where necessary'를 삭제하였으며, 'another country'를 'any country'로 바꾸었다.[92]

제 7 항은 매수인에의 통지에 관한 조항으로 'to take the goods'를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로 바꾸어, 물품인도의 수령이란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제 8 항은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상응하는 전자식 서류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장 말미에 'to take the goods'란 문언을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4/B4'란 문언으로 바꾸어,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통상적인 운송서류 등은 매도인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제 10 항은 기타의 의무로서 첫째 문단 말미의 'therewith'를 'herewith'로 바꾸었다.

(다) 買受人의 義務

제 2 항은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expense every assistance'를 'expense, every assistance'로 바꾸었고, 'where applicable'이란 말을

88) DDU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4 항 참조.
89)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90) EXW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6 항 참조.
91) 주 3) 참조.
92)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10 항 참조.

추가하고,[93] 'importation'을 'import'로 바꾸었다.

제 3 항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b) 호를 별도로 두어 'Contract of insurance'란 제목하에 'No obligation.'이란 문장을 추가하였다.[94]

제 4 항은 인도의 수령에 관한 조항으로 'as soon as'를 'when'으로, 'placed at his disposal'을 'delivered'로 바꾸었다.

제 5 항은 위험이전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 중의 'placed at his disposal'이란 문언을 'delivered'로 바꾸었다. 그리고 'The buyer must, should he fail to fulfil hi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B2, bear additiona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ncurred thereby.'란 문장을 신설하여, 매수인은,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으로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의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모든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품의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문단 중의 'the period stipulated'이란 말을 'the agreed period'로 바꾸었으며,[95]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早期 移轉하는 경우에 충당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 6 항은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첫째 문단 중의 'placed at his disposal'이란 문언을 'delivered'로 바꾼 후, 말미에 'and'를 추가하였다. 둘째 문단 중의 'bear all additional costs incurred thereby'란 문언을 'all additional costs incurred'로 바꾸어 앞부분으로 옮긴 후, 'Should he fail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A4'란 문언을 'if he fails to fulfil his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B2'로 바꾸어,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 제 2 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무 제 7 항에 따른 통지를 주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 경우에는 충당요건이 적용된다.

제 7 항은 매도인에의 통지에 관한 조항으로 'stipulated period'란 말을 'agreed period'란 말로,[96] 'the place of taking delivery'란 문언을 'the point of

93) EXW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 2 항 참조.
94) EXW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3 항 참조.
95) 주 7) 참조.
96) 주 7) 참조.

taking delivery at the named place'로 바꾸어, 인도수령의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수령의 지점에 관한 충분한 통지를 주도록 하였다.

제 9 항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조항으로 'unless otherwise agreed'를 삭제한 후, 'pre-shipment inspection'을 'any pre-shipment inspection'으로 바꾸었고, 'such inspection is'란 문언을 추가하였으며, 'exportation'을 'export'로 바꾸었다.[97]

제 10 항은 기타의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at his request'를 'at the latter's request'로, 'importation'을 'import'로, 'placing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란 문언을 'making the goods available to the buyer'란 문언으로, 그리고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를 'in accordance therewith'로 바꾸었다.

Ⅲ. 結 論

本稿는 인코텀즈 2000 중에서 非海上賣買條件에 속하는 EXW, FCA, CPT, CIP, DAF, DDU 및 DDP 조건 등 일곱 가지의 定型去來條件의 主要 改正內容과 特徵을 검토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먼저, 時宜의 貿易慣習을 보다 명료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인코텀즈상의 사용문언을 통일시켰다. 둘째로 개별 定型去來條件의 前文에서 당해조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 후, 前文의 內容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혔다. 셋째, 매매계약당사자들이 인코텀즈 2000에 수록된 개별 定型去來條件을 변형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매매계약에서 분명하게 합의해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개별 定型去來條件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XW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않고 또 모든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할 때 인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FCA 조건에서는 구 조건에서의 다양한 운송방식에 따른 물품인도장

97) FCA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 9 항 참조.

소와 인도의무 완료시점을 보다 단순화시켜,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양분하고, 前者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하며, 後者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할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CPT 조건과 CIP 조건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합의된 목적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 및 부과금, 목적장소에서의 물품의 적재비용과 양하비용, 통과운송시의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의무를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내용과 연계시키고 있다. 즉, 운송계약에서 이들 비용의 지급이 매도인 부담으로 되어 있으면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넷째, DAF 조건에서 매도인이 수출통관된(그러나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을 국경의 지정된 지점과 장소에서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운송의 도착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한 때 인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섯째, DDU 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의 모든 도착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임과 매도인이 목적지 국가에서의 모든 수입관세에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DDP 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의 모든 도착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임과 매도인이 목적지 국가에서의 모든 수입관세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두 조건 모두에서 사용되는 "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그 절차에 따른 지급, 관세, 조세 및 기타의 부과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여섯째, 물품의 인도장소가 선박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륙의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FOB 조건 대신에 FCA 조건을, CFR 조건 대신에 CPT 조건을, CIF 조건 대신에 CIP 조건을 이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매도인이 내륙의 어느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FCA 조건, CPT 조건 또는 CIP 조건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컨테이너를 통한 물품의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에도 현재 FOB 조건, CFR 조건(심지어 C&F 조건) 또는 CIF 조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들 조건들을 관행적으로 이용해 오고 있고 또 인코텀즈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이러한 바람직

하지 못한 관행은 인코텀즈 2000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매매계약에서 예컨대 FCA 조건을 이용할 때 모든 당사자들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COTERMS 2000 and Non-Maritime Trade Terms

Choi, Myung Kook

This study has been focused on the revis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7 non-maritime trade terms(EXW, FCA, CPT, CIP, DAF, DDU and DDP) in Incoterms 2000.

Main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the use of different expressions intended to convey the same meaning has been avoided and the same expressions as appear CISG have been used.

Second, the content of preamble in each trade terms has been shortened and definitedly.

Third, if the parties are going to use variants of trade terms in Incotrems 2000, the meaning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in the contract of sale.

Main revisions of the 7 trade terms are as belows:

First, Incoterms 2000 has emphasized that in EXW, the seller delivers when he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not cleared for export and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Second, in FCA, delivery is completed; a) If delivery occurs at the seller's premises,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loading. b) If delivery occurs at any other place, the seller is not responsible for unloading.

Third, in CPT and CIP, all costs and charges relating to the goods whilst in transit until their arrival at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unloading costs and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as well as the cost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 are linked with the conte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Fourth, Incoterms 2000 has emphasized that in DAF,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cleared for export, but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 but before the customs border of the adjoining country.

Fifth, Incoterms 2000 has emphasized that in DDU,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in DDP,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Sixth,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FCA, CPT and CIP instead of FOB, CFR and CIF should be used.

Key Words : INCOTERMS 2000